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5월 26일

나. 발 의 자: 임헌호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8일

라. 상정일자: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임헌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2조)

○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○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의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조례안은

- 영등포구 관내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과 관련하여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인 “학교 등”을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로 범위를 정하고, “방사능 등 유해물질”을 방사능, 중금속, 농약, 유독성 물질 등으로 명명하였고,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에서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함.
- 안 제4조(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) 및 안 제5조(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)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,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해서는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도록 함.
- 안 제6조(교육)에서는 구청장이 급식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.

○ 검토 결과

-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 농·수산물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 등에게 지급되는 단체급식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.
- 현재 학생 등의 단체급식과 관련해서는 2013년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에서는 「영유아 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이에 우리 구에서도 본 제정으로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급식 관리를 통해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를 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,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 검사 등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
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
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(임헌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6. .

발 의 자 : 임헌호·우경란·양송이
·유승용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학교 등' 과 '방사능 등 유해물질' 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(안 제2조)
- 나.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(안 제3조)
- 다.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(안 제4조)
- 라.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행정상 조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(안 제5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유아교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
「학교급식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6. 8. ~ 6. 12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
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 등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
2. “방사능 등 유해물질”이란 방사능, 중금속, 농약,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)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5조(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.

제6조(교육)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

제7조(업무협조 및 의뢰)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